

精油社의 会計処理 統一化에 関한 小考

鄭 鉉 澤

〈京仁에너지·業務部代理〉

이 글은 짧은 기간이나마 본인이 정유사의 会計업무와 油価 관련業務를 다루면서 느낀 短見을 다만 나름대로 披瀝한 것이며, 深奥하고 精緻한 학문적 체계를 研究·記述한 것 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筆者註〉

I. 精油会計의 統一化의 필요성

(1) **動** 資部가 석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石油價格을 통제하고 그 가격算定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정유사의 결산자료와 또는 필요 참고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바 이때 제출되는 各社의 財務諸表, 특히 損益計算書上에 분류되는 計定科目과 각종会計處理방법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비용이나 수익이 各社의 処理規定에 따라 서로 다르게 分류·집계됨으로써 정유 5社 全体를 合算 또는 分析對比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2) 1982년도의 5社年間売出額이 6조원이 넘었고 同年 GNP 대비 約 12.6%를 차지하는 重要 산업으로서 企業会計기준(1981. 12. 23 財務部 承認)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유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함이 필요한 사항을 정유업계의 통일案으로 하여 연구·채택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지며, (基準第131案, 業種別 회계처리 기준) 비록 美国에서도 정유산업 회계처리 기준이 아직 없지만「註1」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채택함으로써 開係當局과의 협의상 마찰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유사의 재정, 경영상태를 외부에 발표할 때 통일된 회계기준이(또는 Uniform Practice라고) 있음으로써 더욱 신뢰성과 健實性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建

設業界는 83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그들 고유의 처리기준을 채택했다고 한다.

「註1」：美國은 FASB에서 Oil and Gas Producing Activities에 관한 기준(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만 발표하였다.

II. 精油社의 회계처리 相異現況과 問題点 분석

1. 재고평가방법의 相異 – Crude, Inventory, Warehouse Stock(Spare Parts) 및 用品

원유 및 제품은 先入先出法(FIFO)과 後入先出法(LIFO)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재고수준이 크고 向後 민간 비축량이 증대될 시는 채택방법의 변경에 따라 Inventory Valuation의 증감差가 막대함으로써 손익상, 자산평가상 많은 技巧와 喜悲가 초래될 것이다.

저장품(Warehouse Stock)의 평가방법도 총평균법, 移動率平均法 等을 主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웬만한 Spare Parts나 用品 등은 재고用이든 아니면 즉시 사용하든 관계없이 구입시 아예 費用處理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고, 사별 특성과 필요때문에 달리 채택할 수도 있지만, 本稿가 統一案을 의도코자 하므로, 원유/재고의 평가방법은 재무구조의 健實性을 이유로해서 後入先出法(LIFO)이 설득력이 있으리라 본다 (재고로 남은 Layers는 대개 저가로 평가). 여기에도 Monthly LIFO나, Annual LIFO나가 양분되지만, Crude Purchase Cost가 급격히 변동되지 않는 한 이것까지는 통일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유사 공통의 절박한 과제, 즉 脱黃시설, 重質油分해시설, 老朽시설개체, 가스化시설, 기타 綜合에너지 산업에로의 전환에 막대한 투자 수요가 필요하고, 精油 산업의 Life cycle은 원유의 可採量제약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健實化는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저장품과 用品의 처리방법도 금액면에서는 그리 큰 비중은 아니지만, 특정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Warehouse Stock은 이동평균법, 용품은 재고처리후 실사용시 비용처리).

2. 製品別 제조原価의 계산방법 통일

(1) 국내 정유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품販売単価에 의한 제조原価 할당법이다. 즉 일정기간의 제품별 생산량과 제조원가 총액을 먼저 산출해 놓고 당해기간의 단위당제품판매가격과(告示價) 생산수량의 積数를 구하고 제품별 적수의 構成比率을 구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총원가를 제품별로 할당(Allocation)하는 방법이다. 美国의 정유사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며, 참고로 인용하면, Allocated on Basis of elative Sales Value, The Sale Value of Products Requiring Further Processing, Treating and so on,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Current Sales Value of Finished Products Estimated to be derived therefrom- 이하생략-라고 하면서 산출방식을 例示하면 :

Illustration of Cost Center Allocations to Products Yield Products Production Bbls	
(A)	(B)
Realization	Value

Per Bbl(C)	Total(D) (B× C)	Distribution Ratio(D)
Manufacturing Cost		
(Total cost × D× B)		

註 : Encyclopedia of Accounting System Vol.3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통제 체제下에서 경유, 나프타, B-C油 등 산업정책적 또는 민생안정을 위한 배려로 低値策定되는 유종과, 반대로 고가정책되는 유종에 할당되는 제조원가는 실원가와 많은 乖離가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2) 제조공정별 원가계산-제품별 實제조 코스트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내외 価格差를 대비하여, 에너지별 상대가격을 분석키 위해서는 Refining (Cracking) Process Chart에 의하여 원가계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도 어렵고 복잡해 아직 개발·정립된 Method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제품별 제조원가계산 방법의 통일案을 위하여 정유사, 회계전문法人, 기타관계전문가와 共同 연구로 통일案(Provision)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가 「特定유종의 국내제조원가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Ready Informations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恥部다 (물론 유종별 구분이 없이 總額面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만). 위의 제조원가 할당방법에서 도출된 원가가 時値주의나, 低値주의(Average Current Cost or Lower Recoverable Cost)나의 채택방법에 따라서 재무제표상 큰 계수차가 생긴다. 이것도 통일화의 대상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減値償却法

(1) 국내정유사는 定額法(Straight Line Method) 또는 定率法(Reducing Balance Method)을 쓰고 있다. 관계 文獻이나 외국의 例를 봐도 이것이 Recommendable Method라고 할 것은 없다. 다만 美国에서는 石油와 가스 탐사개발법에는 Unit of Production Method(生産단위 比例法?)를 FASB에서 규정할 뿐이고, 일반적으로 정유사는

정액법이 널리通用되는 모양이다.

(2) 固定資產의 減值는 3種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이용의 多少에 따라야 하느냐에 따라 採択方法이 달라지게 된다. 정유사 고정 자산의 運転실정이나 耐用年数를 봐서 사업初期에 과도하게 비용처리되는 정율법보다는 사용기간중 균등히 생각되는 정액법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 이유로는 경험적으로 봐서 정유사의 사업초기는 정부고시가격체제, 수요물량의 가격非彈性, 고액의 금융비부담, 원유시장의 가격불확실성, 환율문제 등 정유사 失策으로는 볼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큰 결손이 나기 마련이다. 또 정유사의 이익 배당문제, 차관先에 대한 경영성과 보고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감가상각비를 정산궤도에 進入后에도 균등손비처리 되게 하는 것(정액법)이 타당하리라 본다.

(3) 상각액과 세법上문제 - 현행법인세법 제51조(특별상각) 1항1호에 특별감가상각 대상업종과 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는 바, 정유사 입장으로는 構築物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유사는 기계장치 못지 않게 구축물로 분리되는 貯油탱크, 파이프라인, Marine Terminal과 Loading /Unloading Facilities, 기타 同 부대시설이 그 기능과 취득가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큰 모순이다. 他 제조업에 사용되는 機械설비와 정유사 구축물은 그 기능이나 가동시간面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관계당국과 協議, 조속히補完되어 稅務上의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

4. Usance 이자 및 Term Charge 計定 分類문제

(1) Usance利子는 원재료비(원유인 경우)의 부대비용으로 본다면 원료비(Crude Purchase Cost)로 분류되고(기업회계기준 69조 3 항) Banker나 Shipper가 공여하는 여신에 对한 지급이자로 보면 금융비, 즉 영업외비용의 支給利子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81조/항)

Term Charge 또한 L/C개설시의 Banking Process에 발생하는 Banking Charges로 보느냐(부대비) 아니면 은행의 納因 (Arrangement)에 의한 지

급보증성격(금융비)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상이할 수 있다.

(2) 一般的인 通說과 現在의 Practice는 이자로 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本人 역시 Usance 利子는 수입 Charge에 반드시 필수的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Term Charge도 L/C의 有効期間 長短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원료구입비(Landed Cost)의 Cost Factors로 보기方が 어려우며, Usance 이자는 통상적으로 여신자의 신용공여 Acceptance 日 이후 30일내로 지불되므로 当期비용으로 제 때에 損費處理하므로써 정유사의 어려운 流動性 사정을 表出하여 對外 弘報에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동자부의 油価산정시 비용 Grouping 에도 금융비로 분류됨은 각각 利子 및 보증료 성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5. 石油事業基金의 적용계정분류

(1) 基金을 Landed Cost의 한 구성 Factor로 본다면, 원료비(Crude Purchase Cost)로 분류되어야 하고, 하나의 정부부문 비용의 公課金이나 課徵金으로 본다면 直·間接費中의 제세공과금이나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금은 그 性格上 기금징수率의 상하 조절과 면제로 유가의 安定을 위한 가격조절 내지 소비자 정제주여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는 매입원료비에 직접計上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에 의한 損失補填이 확정되거나, 지급될시에 当該보전용도에 해당하는 계정(원가계정)을 前后에서나마 보전액만큼-(minus) 표기로 借辺조정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영업外수익(貸刃) 처리할 수 있는 바, 이것도 통일화의 검討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實例로 봐서 회계年度가 넘어서 또는 発生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보전될 때가 있었는데 期間概念인 손익계산서에 소급 또는 更定處理함에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정유사가 未確定액을 미리 未受金(A/C Receivable)이나 未収収益處理를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6.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자가소모 연료(제조공정 Loss)의 회계처리

정유사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제조원가 보고서에 표기하거나, 壓縮分介로 표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별도 差減 표시 방법 등이 있는바 어떤 형태이든 原価계산 總額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것도 정유사간 통일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原油, 제품의 羅列 순서의 통일화

정유사의 일상적인 Paper Working에 이것만큼 많이 쓰는 어휘나 表類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순서가 정유사내부 部署別, 정유사間, 동자부내의 각 용도에 따라 그 순서가 천태 만상이다. 예컨대 原油를 맨 먼저 쓰고, Premium Gasoline으로 시작해서 Butane으로 끝나는 수도 있고, Propane에서 출발하여 아스팔트, 원유로 羅列하는 경우도 많으며, 같은 유종이라도 HS(고유황), LS(저유황) 순서가 十人十色이며, 병커A,B,C의 表記순서 역시 어지럽도록 무질서하다.

配列방법에는 Distillation Tower의 위로부터 뽑아내는 유종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說도 있으나, 제조유종의 多樣化와 앞으로 LNG, NGL 등이 수록될 수 있으므로 現行 法定月間보고서인 생산 및 소비실적보고서上의 배열순서에 따라 통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사무능률화와 EDPS化를 위하여 하루 속히 통일화되어야 한다.

8. 油価算定期의 精製費 細分항목과 배열순서

(1) 동자부의 유가산정표류를 보면, 原油費, 金融費, 精製費(調整事項과 投資報酬 포함)로 크게三分하고, 精製費를 비용성질에 따라 다시 細分하는 바, 구분 細目과 순서가 수시로 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유사가 제출한 기초자료(Raw Data)와의 Cross Checking과 Matching이 용이치 못하고, Plus 計數와 Minus 計數 및 조정 計數가 무질서하게 混成되어 解讀하기가 難渋하다.

물론 행정관례와 必要性 및 官主導型이라는 현실의 여건때문에 업자가 아래라 저래라 云云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細分항목과 배열순서는 통일성과 一貫性이 特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앞으로 民間自律의 油価策定을 유도하고 가격

심사기준을 制定해야 할 처지이므로 비용 항목의 배열기준 定立이 더욱 요망되는 것이다.

(2) 현재 계기된 비용 細目을 분석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즉 販売管理費와 輸送貯油, 利子 및 換差損과 営業外費用 等의 表現은 중복해석이 가능하고, 투자보수를 정제비에 合算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等에 대하여 그 표현방식과 Grouping에도 통일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9. 損益의 認識과 歸屬年度문제

(1) 精油社는 石油事業法의 규정에 따라 1.12 換差補填 기준価차액보전, 多刃化보전 등을 수차례 받아 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告示形태로 하여 비용(추가부담포함)의 원인발생이나 이익실현 합계년度를 지나서 다음 년도에 가서야 確定發表됨으로써 정유사는 손익의 귀속년도 문제와 결산마감에 사실상 진통을 겪어 왔다. 기업회계기준에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源泉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収益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對應表示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實務上 企業會計의 손실은 發生時點, 収益은 實現시점에서 Bookkeeping 하는 것이 통례다. 동자부 告示에 귀속년도에 관한 明示的 特記조항이 없는 한, 각社는 당해사의 회계처리기준이나 利害得失을 비교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 세무회계는 債權, 債務의 確定期點이 손익의 귀속년도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고시는 行政行為上 公定性, 不可爭性, 不可變性, 實効性의 特質을 가지므로 告示의 壓力發生시점에 정유사는 基金으로부터 보전을 받든, 앞으로의 지불기금(Payable Fund)에서 상쇄 차감하는 債權은 일단 확정된 事項이다. 따라서 정유사는 告示上 별도의 特記조항이 없는限, 고시 발표일이나 壓力發生시점이 屬하는 會計년도에 손익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會計年度(事業年度)를 넘겨서 고시가 발표됐더라도 기업회계상 發生년도의 손익으로 앞당겨 귀속처리하고, 이에 따라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미리 稅金내는 것을 세무당국은 굳이 是否認하지는 않을 것이다.

(4) 租稅減免의 혜택有無, 課標算定期의 수준결정(Taxable Base), 公開法人의 배당문제, 合作先의

投資조건, 신규借款도입이나 合作先물색 등의 각社別 사정과 利害得失로 인해서 기금보전분의 귀속년도를 일률적으로 통일화하자는 것은 도리어 정유社間의 결속을 깨고 경영의 独自性을 沮害할 가능성도 크지만, 반면에 각社自律은 손익의 对比分析과 세무당국의 調査 등으로 否의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I. 精油社 黑字示顯에 对한 認識 批判

(1) 우리는 보통 순이익을 파악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 1회계기간 中의 총수익에서 총비용 (법인세포함)을 差減한 差額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企業會計 기준은 그 發生過程에 따라 売出總利益 (Gross Profit), 営業利益 (Operating Income), 經常利益 (Ordinary Income), 法人稅차감前純利益 Income Before Taxes), 總當期純利益 (Net Income)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나) 또 하나의 방법은 간단하게 期末資本에서 期初資本을 뺀 差額이 プラス이면 순이익, 마이너스면 순損失로 하는 計算方法이 있다.

(2) 기업이 一營業期間中 영업을 해서 순이익을 示顯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純이익의 意義와 役割, 기능에 대하여 教科書式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① 이익発生有無와 그 수준(크기) 때문에 자 유경제체제下에서 발생가능한 경제의 無秩序와 需給不均衡이 조화롭게 조정되고 운영된다. ② 기업의 目的達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③企業을 永続시킨다. 따라서 기업가가 기업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必要最小限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는 道德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国内재벌某氏曰)

(3) 정유사가 赤字에 시달리다 어쩌다 흑자가 나서 決算공고나 稅務당국의 納稅実績순위가 紙上報道되면 言論은 물론 온 国民이 신경질적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現実이다. 言必称 정부는 소비자의出血로 정유사가 폐돈을 별도록 감싸고 있다느니, 独立기업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라느니, 외국 메이저와 손잡고 막대한 시설과 資金力으로 시장을 左之右之하며 眼下無人格으로 군림한다…등등, 이것은 정유사의 속사정을 일반대중이나 유관기관에 제대로 납득할 수 있도록 P.R.하지 못한 소이도 있지만, 사실은 精油產業이 짐재하고 있는 문제 즉,

国内外 에너지시장의 不確實性과 위험, 에너지 수요 패턴의 변화에 따른 시설투자,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에너지 代替,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온갖 企業活動의 시행착오 등을 – 이런 것들의支出이나 費用發生이 現時点에서는 비록 Realize 안됐다 하더라도 – 앞으로 불원간 부담이 될 특정 目的을 위한 준비로써 추정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써 앞당겨 처리하지 못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장래의 대비가 소홀한 채 外見上 당기순이익의 계수만 화려하게 示顯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1 정유산업의 구조개편을 為한 向后의 막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決算后 이익잉여금을 차분한 積立金의 성격으로 볼 것 이나, 아니면 장래를 대비한 現時点의 비용처리를 가능케 하는 充當金 (Reserve, Allowance)으로 볼 것 이나 하는 것은 논리상 또는 実定法上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3)-2 本人은 本稿에서 다만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고 이를 評価性 및 負債性 充當金으로 看做, 解析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가. 정유공장을 구성하는 거대한 장치 시설 등은 석유자원의 有限性, 원유가격의 不定安으로 인한 他에너지와의 가격경쟁성상실, 대체에너지 개발로 급격한 석유의존도 감축, 석유의 자원 내셔널리즘 등의 사유로 해서 관계税法上 인정하는 Service Year과는 관계없이 조만간 Scrap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痞疾 뎅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現在에서 미리 評価 (Valuation) 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일종의 Reserve for Self-Insurance 개념으로)

나. 구조개편 – 예컨대 석탄액화나 기화장치 신설, 중질유 분해시설 신증설時 막대한 資本의 支出과 改·補修의 損費性 出血이 발생될 것이므로 이를 미리 負債性 Liabilities 損費로 추계하고

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행착오나 성공여부의 위험을 담보기 위하여 미리 오늘의 정유산업 흑자의 決算前一部를 Reserve 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發想은 이론상 많은 무리와 모순이 있고 実定法上 損費處理가 허용되지 않겠지만, 我田引水格으로 한갓 전개할 뿐이다. 그러나 수출업계의 해

외시장 개척준비금이나 건설업계의 工事損失충당금, 瑕疵보수충당금 등도 따지고 보면 이상의 論旨와 50 步100 步라고 하겠다. 다만 官民一体로 노력(?)하여 税法에 반영치 못한 차이뿐이다.

(3)-3 精油業界가 당면한 절박한 충당금처리 對象 프로젝트를 대강 열거한다면 - 備蓄事業 충당금 (Stock Filing Allowance), 構造改編충당금 (Facilities Reformation Allowance), 에너지 資源開發 충당금 (Energy Resources R/D Allowance) 순으로 仮称分類하고 이하 이의 費用処理를 概述한다.

西歐선진국의 大企業들은 종래의 결산 概念, 즉

「投資에 대한 当然한 保証」의 次元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環境, 情報, 정치, 道德관계의 Factors 까지도 결산개념에 포함시켜 이를 각각 수치로 换算 -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經濟的目標와 經濟外의 目標를 상호 관련시켜 공동효과를 동시에 파악케 하고 장래를 분명히 조정할 수 있도록 결산표류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는 不及하더라도 장래에 확실히 到來할 거대한 경제적 시련을 현시점의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노력과 슬기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區 分	對 象	充 当 金 算 出	分 介		備 考
			Dr.	Cr.	
1. 비축사업충당금	비축시설 신증설비 비축재고 구입 및 유지보수비 해외선물換시장 참여 손실 예상 국내 공개시장조작 손실예상	① 기말 Inventory 가액의 일정률 또는 ② 정상재고 초과분 Inventory 가액의 일정률	제조경비중 비축비 (경비)	비축사업 충당금	
2. 구조개편충당금	탈황시설, Cracking 시설 他석유화학개편시설 (BTX등) 석탄액화시설과 Gasification 시설. 기타 정유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Revamping	① 每期 매출액의 일정률이나 ② 제조비의 일정률	제조경비중 정유산업구조개편비 (경비)	구조개편 충당금	
3. 자원개발충당금	海外油田, Gas田 개발탐사비, 석탄 또는 우라늄 개발탐사비, 原子力, 風力, 地熱, 潮力, 태양 열개발, Photovoltaic(光전지), Tesla波, 기타 대체에너지 개발 Technology 비용	每期 원유 및 제품 수입액의 일정률	제조경비중 자원개발비 (경비)	자원개발 충당금	

IV. 맺는 말

결국 정유산업은 머지않아 鉄道產業과 같이 斜陽化가 필연적이고 Majors의 위력은 死滅한 恐動의 존재로 轉落되고 말것이다. (The 3rd Wave By Albin Toffler)

現今의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과 여건하에서라도 우리 정유 5社는
- 정유사 고유의 공통회계 事案은 이를 통일기준으

로 회계처리하고,

- 현재의 이익개념의 해석과 숫자를 읽는 視野를 달리해야 하며, 미래의 綜合에너지산업으로 전환키 위한 健實한 재무구조를 다지기 위해서 다각적인 회계처리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 国民과 政府기관이 정유사 재무제표를 보는 批判的 자세를 명쾌히 拂拭시키고 신뢰와 이해를 보다 敦厚히 하기 위한 하나의 方策을 도모함에 있어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주책없는 素望이다. *